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1161
----------	------

2023년 9월 4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32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3년 9월 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가. 제안이유

-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국내 최초 에너지 자립 공공건축물이자 미래 건축물의 모델로서, 2012년 개소 이래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시체험 교육을 통한 시민 기후 소양 함양에 기여해 왔음.
- 기존 위탁기간 종료시점(~'23.12.31.)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의 역할도 추가하여 신규위탁함으로써 서울시 환경교육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탁사무명: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
- 민간위탁 필요성 및 추진 근거
 - 기후변화의 가속화에 따라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기반이 없어 환경교육 정책 및 연구·개발 등의 임무를 수행할 전담 기구의 구축이 필요함.
※ 2023.7. 현재 환경교육센터 미지정 광역지방자치단체: 2개(서울, 광주)
 -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제로에너지 건축물로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물에너지 분야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함.
 - 환경·에너지 교육 프로그램·교재 개발, 전문인력 양성, 환경교육 연구·조사 등 서울시 환경교육 기반 구축 및 직접 교육·전시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업무 능력과 경험이 필요함.
 - 따라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의 기술, 경험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력·예산 등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위탁사무 내용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시설 관리]

- 제로에너지하우스 건물 에너지 모니터링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건물 및 야외부지 관리
- 전시·체험시설물 및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등 시설물 유지관리
- 제반 시설, 장비 등 재산 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 등 방문객 안전사고 관리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사무]

- 신재생에너지 최신 동향·기술 정보 제공 및 제로에너지하우스 운영 모델 공유
- 에너지·기후위기 주제 전시 기획 및 스마트 그린 전시관 구축
- 시민 참여 에너지·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인력 관리 및 각종 행정업무 등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신규)]

- 서울시 환경교육 정책 수립 관련 연구 및 조사
- 국가, 기초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 주체 간 연계·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사회·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보급
-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기반 구축

□ 시설 개요

- 시설명/소재지: 서울에너지드림센터/서울시 마포구 증산로 14
- 규 모: 연면적 $3,762 m^2$ (지하1층/지상3층), 대지면적 $13,039 m^2$
- 주요시설: 홍보·전시관, 기후변화배움터, 체험학습실, 다목적실 등
- 준공년월: 2012. 9. 19.(개관일: 2012.12.12.)

□ 위탁기간: 3년('24. 1. 1. ~ '26. 12. 31.)

□ 수탁자 선정 방식: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2023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23. 7. 23.)

□ 소요예산: 1,545백만원(예산지원형, 시설형 위탁+사무형 위탁)

※ '23년 예산 대비 3% 증액,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운영예산(약 3억원) 신규 편성운영비 지원 없음(자립형, 시설이용료 수익금으로 운영)

□ 기대효과

-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 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활용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 인력·예산 등의 비용 절감 및 경제적 효율성 도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2024년 예산편성(예정)

다. 합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광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현황('23.7. 현재)

구분	센터명	지정기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부산환경보전협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사)대구환경교육센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대전환경운동연합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재)울산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센터	세종환경교육센터
경기도	경기도 환경교육센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강원특별자치도(2)	강원도 환경교육센터 1호	강원도자연학습원
	강원도 환경교육센터 2호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충청북도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사)풀꿈환경재단)
충청남도	충청남도 환경교육센터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전라북도	전라북도 환경교육센터	자연환경연수원((사)자연생태환경연구소)
전라남도(3)	전라남도 환경교육센터 제1호	전라남도자연환경연수원
	전라남도 환경교육센터 제2호	신안군생태교육원((사)섬생태연구소)
	전라남도 환경교육센터 제3호	YMCA가사리생태교육관
경상북도	경상북도 환경교육센터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상남도	경상남도 환경교육센터	경상남도환경교육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사)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귀수)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에너지제로 건물과 전시관으로서 의미가 있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이하 “에너지드림센터”)가 녹색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홍보·전시·교육의 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의 역할을 추가하여 신규 위탁¹⁾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2.08.) p.30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

②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무를 추가하거나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나. 검토 의견

1)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

- 본 동의안은 에너지드림센터와 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자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 신규 민간위탁 추진계획」(‘23. 08.), 후자는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와 제1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추가는 기존 에너지드림센터의 시설 인프라의 활용과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사무는 ①서울시 환경교육 정책 수립 관련 연구 및 조사, ②국가·기초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③사회·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④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기반 구축 등임.
- 이를 포함한 위탁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2. (생략)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생략)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8. (생략)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2)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사항으로 위탁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동의안에는 제4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시설 위치도가 누락되어 있는바,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안이 제출되도록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1. 위탁사무명 |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 3. 위탁사무 내용 | 4. 위탁시설 개요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u>위치도</u>) |
| 5. 민간위탁기간 | 6. 수탁자 선정방식 |
|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
-

3)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에너지드림센터와 환경교육센터 관리 · 운영 사업은 2023년 7월 신규 민간위탁 추진계획²⁾이 수립된 후 이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심의³⁾한 바 있음.
-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중 신규(공모)사업은 사전조사 →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시의회 보고(동의) → 시의회 의결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 계획은 현재까지 이러한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2)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 신규 민간위탁 추진 계획(기후환경정책과-10056, '23.7.20.)

3) 2023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기후환경정책과)(조직담당관-7942, '23.7.26.)

<2022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형		위탁기간	심의결과	비고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시설형	신규	3년	적정	

4) 민간위탁 성과보고서⁴⁾ 개선요청사항 요약

- **종합점수:** 현 위탁사는 종합평가 결과 68.04점을 획득하였음. 이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2.8.)의 재계약 기준점수인 75점보다 낮은 수준이며, 감점 항목에서 (-)13.1점을 받은 것에 기인함.
- **사업 지표:** 개별사업 성과 지표발굴 및 목표치 설정에 있어 체계성이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사업의 성격에 맞게 사업지표를 설정하고 해당 지표가 사업성과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목표인지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과 위주의 관점에서 과업을 설정하고 그 성과지표의 합리성과 목표치 설정의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함.
-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서울시 지도점검 결과,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바, 예산집행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함.
- **서울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 2023년 2월 이루어진 특정감사에서 총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중 3건은 해외 여비 부적정 사용 등 예산 집행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환수 조치(2,964천원)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6건은 위원회 규정 등의 정비 소홀, 활동비 지급 증빙자료 정리 미흡 등에 관한 것임.

4)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서울에너지드림센터 관리운영-(’23.06., 서울특별시)

5) 종합 의견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내에 환경교육 정책 수립 관련 연구·조사,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할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를 구축하여 기존 민간위탁 사무와 연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환경교육 시너지 효과 및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과 내용,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위치도 누락), 민간위탁 추진 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현 위탁사의 종합평가 점수가 재계약이 불가한 수준인 68.04점으로 매우 낮은 점과 사업지표 설정, 서울시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등에서 일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바,

소관부서인 기후환경본부의 다양한 대책 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지적된 문제를 조속히 시정 처리하고 이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161
------------	------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국내 최초 에너지 자립 공공건축물이자 미래 건축물의 모델로서, 2012년 개소 이래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시체험 교육을 통한 시민 기후소양 함양에 기여해 왔음
- 나. 2023년 12월 31일자로 기존 위탁기간 종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의 역할도 추가하여 신규위탁함으로써 서울시 환경교육의 중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시설명: 서울에너지드림센터
- 위치: 서울시 마포구 증산로 14(상암동 1535-3)
- 규모: 연면적 $3,762 m^2$ (지하1층, 지상3층), 대지면적 $13,039 m^2$
- 주요시설: 홍보·전시관, 기후변화배움터, 체험학습실, 다목적실 등
- 개관일: 2012. 12. 12.(준공일 2012. 9. 19.)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2024.1.1. ~ 2026.12.31.(3년)
- 위탁유형: 시설형 위탁(예산 지원)
- 선정방식: 공개모집
- 사업비 : 1,545백만원(2024년 편성기준에 따라 세부내역 재산출 예정)
※ '23년 예산 대비 3% 증액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운영예산(약3억) 신규 편성
- 위탁업무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시설 관리]

- 제로에너지하우스 건물 에너지 모니터링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건물 및 야외부지 관리
- 전시·체험시설물 및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등 시설물 유지관리
- 제반 시설, 장비 등 재산 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 등 방문객 안전사고 관리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사무]

- 신재생에너지 최신 동향기술 정보 제공 및 제로에너지하우스 운영 모델 공유
- 에너지·기후위기 주제 전시 기획 및 스마트 그린 전시관 구축
- 시민 참여 에너지·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인력 관리 및 각종 행정업무 등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신규)]

- 서울시 환경교육 정책 수립 관련 연구 및 조사
- 국가, 기초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 주체간 연계·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사회·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보급
-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기반 구축

다. 기존 민간위탁 추진현황

- 위탁업무: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관리 사무
 - 에너지·환경 분야 시민 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시설 운영·관리 및 건물·효율화 연구·모니터링 및 운영 모델 공유
- 운영성과
 - 에너지·기후변화 전문 체험 교육 통한 시민 기후 소양 함양에 기여
 - 국내 최초 ZEB(제로에너지빌딩) 공공건축물로서 위상 강화
- 운영실적
 - 방문객 수 (단위: 명)

분야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5월	누계
전시(단순) 관람	138,752	21,088	20,965	2,863	7,499	16,205	14,610	218,827
프로그램 참여	221,007	70,986	72,223	10,205	7,983	22,104	11,546	415,817
총 방문객	359,759	92,074	93,188	13,068	15,482	38,309	26,156	634,644

- 주요 운영 프로그램

구분	내용
정규 프로그램	유아, 초등, 중·고등, 개인/가족
비정규 프로그램	방문교육, 문화행사, 방학특강, 전문교육, 기념세미나
온라인/비대면 프로그램	온라인, 원격수업, 교구배송
투어 프로그램	신나는 에코투어, 신재생에너지 투어, 환경재생문화 투어
전시 해설	일반 전시해설, 제로에너지 건축기술 전문해설

라. 주요 변동사항

- 사무추가: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
 - 근거: 환경교육법 제25조, 환경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지침
 - 추진배경: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전시·체험교육 시설 인프라 활용, 기준 센터 위탁사무 범위(교육 운영 등)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기대 및 전문성 강화
- 인력추가: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인력(증 3명)
 - 인력구성 : 14명(센터장 1, 환경교육센터 6, 교육운영국 3, 시설운영국 4)

마. 민간위탁(신규위탁) 필요성

-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라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기반이 없어 환경교육 정책 및 연구·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전담기구의 구축이 필요함
※ 2023.7. 현재 환경교육센터 미지정 광역지방자치단체: 2개(서울, 광주)
-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제로에너지 건축물로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물에너지 분야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함
- 환경·에너지 교육 프로그램·교재 개발, 전문인력 양성, 환경교육 연구·조사 등 서울시 환경교육 기반 구축 및 직접교육·전시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업무 능력과 경험이 필요함
- 따라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의 기술, 경험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력·예산 등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교육법)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 ① 시 · 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 · 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 3.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 4.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 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지정 등)

-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및 사회의 환경교육을 체계적 ·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2.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 ③ 시장은 환경교육센터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환경교육의 위탁 등)

-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와 기초환경교육 센터에 환경교육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편성(예정)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광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현황('23.7월 현재)

구분	센터명	지정기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부산환경보전협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사)대구환경교육센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대전환경운동연합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재)울산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센터	세종환경교육센터
경기도	경기도 환경교육센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강원특별자치도(2)	강원도 환경교육센터 1호	강원도자연학습원
	강원도 환경교육센터 2호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충청북도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사)풀꿈환경재단)
충청남도	충청남도 환경교육센터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전라북도	전라북도 환경교육센터	자연환경연수원((사)자연생태환경연구소)
전라남도(3)	전라남도 환경교육센터 제1호	전라남도자연환경연수원
	전라남도 환경교육센터 제2호	신안군생태교육원((사)섬생태연구소)
	전라남도 환경교육센터 제3호	YMCA가사리생태교육관
경상북도	경상북도 환경교육센터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상남도	경상남도 환경교육센터	경상남도환경교육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사)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조병훈 (☎ 2133-3538)